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 가입대상** *임의가입
- 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②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직신고 대상입니다.)
 - ③ 위의 ①, ②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포함)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

- 가입방법**
- 보험가입자 :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가입신청 : ① 중소기업사업주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접속 → 사업장 → 대표자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 ② 가족종사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접속 → 사업장 → 중소기업 가족종사자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보험료

- 월 보험료 = 월 보수액(12등급 중 선택) X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이외포함)
- 예) 도소매업자가 1등급을 선택한 경우 월 보험료 : 2,198,400원 X 9/1,000 = 19,780원

보수액 및 평균임금

- 실제소득에 관계없이 선택한 등급별 보수액으로 보험료 산정
- 선택한 등급별 평균임금 기준으로 재해보상

* 가족종사자의 경우 아래 기준보수 중 1~5등급까지만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보수액(월)	평균임금(월)
1등급	2,198,400	73,280
2등급	2,632,800	87,760
3등급	3,067,000	102,250
4등급	3,502,200	116,740
5등급	3,936,900	131,230
6등급	4,371,600	145,720
7등급	4,806,300	160,210
8등급	5,241,000	174,700
9등급	5,675,700	189,190
10등급	6,110,400	203,680
11등급	6,545,100	218,170
12등급	6,979,800	232,660



2022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 출퇴근이외 : 1.0/1,000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4. 건설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행업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업	28
출판·인쇄·제본업	10	8. 농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8	10. 금융 및 보험업	6

가입혜택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아래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2018.1.1부터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구분	내용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한 경우 요양비 지급(병원비, 간병비, 이송료 등)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가 남는 경우 장애급여	치료종결 후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 연금 : 급여(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구분	내용
장해를 위한 장애비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장애 1~12급 장애급여자 등 직업훈련비용, 재활운동비 지급
기타	· 상병보상연금 : 치료기간 2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에 해당 · 장애급여 : 장애등급 1~2급 중 해당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연도별 예산 소진 시까지)

기관	지원내용
경상남도	· 대상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4등급 : 보험료 50% / 5~8등급 : 40% / 9~12등급 : 30% · 신청·문의 :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15)
강원도	· 대상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12등급 : 보험료 50% · 신청·문의 : 강원도 일자리정책과(☎ 033-249-3933, 3929)

지원대상자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구분	지원내용
광주광역시	· 대상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12등급 : 보험료 30% · 신청·문의 :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062-960-2635)
부산광역시	· 대상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4등급 : 보험료 50% / 5~8등급 : 40% / 9~12등급 : 30% · 신청·문의 : 부산신용보증재단 교육컨설팅팀(☎ 051-860-6728)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comwel.or.kr>
☎1588-0075

유튜브에서 확인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자영업자에게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지금 가입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가입대상

*임의가입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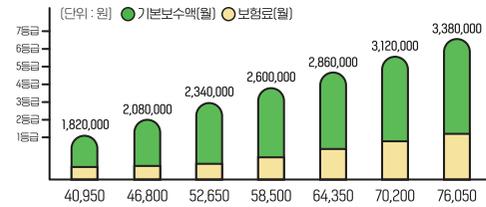
-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개인 사업장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
 - ③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단,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
- ※ 부동산임대업자, 상시 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만 65세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고 가입하시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실업급여 제외)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 방법 1. 홈페이지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방법 2. 공단 방문, 우편·팩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 제출서류 :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보험료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



'21.7.1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중 취득을 원하실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유지 신청서" 추가 제출)

- ※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고유번호증만 가진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 6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연도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자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각 지자체 중복 지원 가능)

기관	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7등급 :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50%~20% · 신청 : 홈페이지(go.sbiz.or.kr),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 문의 : 중소기업통합 콜센터(☎1357)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7등급 : 보험료 30% · 신청 : 문의 : 경상남도청 소상공정책과(☎055-211-3415)
대전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7등급 : 보험료 30% · 신청 :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042-380-3084)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7등급 : 보험료 30% · 신청 : 홈페이지(www.seoutsbdc.or.kr), 서울신용보증재단 방문 ·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2등급 : 보험료 40% / 3~4등급 : 50% / 5등급 : 70% / 6등급 : 60% / 7등급 : 50% · 신청 : 문의 : 강원도 일자리정책과(☎033-249-3933, 3929)



기관	지원내용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7등급 : 보험료 30% · 신청 : 문의 : 홈페이지(www.gmr.or.kr), 콜센터(☎1600-8001)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7등급 : 보험료 30% · 신청 : 문의 : 부산신용보증재단 교육컨설팅팀(☎051-860-6728)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및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1~7등급 : 보험료 50% · 신청 : 문의 :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 보부상콜센터(☎041-424-4000)
울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7등급 : 보험료 30%(단, 5~7등급인 경우 4등급의 30%만 지원) · 신청 : 문의 : 울산일자리재단 고용유지개선팀(☎052-283-7932)
광주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7등급 : 보험료 30% · 신청 : 문의 :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062-960-2635)

“ 실업급여 지급신청 및 내일배움카드 관련 구체적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혜택 1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6개월 연속하여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시 폐업신고서, 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비용 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②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③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액 및 일수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60%)을 정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지급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폐업"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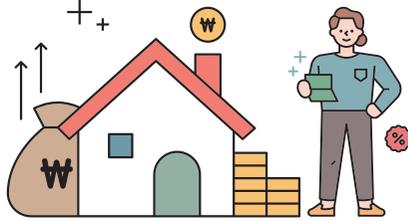
☑ 수급자격 인정

-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
- 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입점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하고 폐업
-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 부모, 동거친족의 30일 이상 직접 간호에 따른 폐업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폐업



☒ 수급자격 제한

- 법령 위반 허가취소,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혜택 2 직업능력개발 지원(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자)



신청방법

내일배움카드 신청	훈련과정검색
HRD-Net(www.hrd.go.kr) 또는 고용센터	HRD-Net(www.hrd.go.kr)메인화면에서 [직업훈련정보]-[근로자훈련과정] 메뉴 활용 또는 고용센터

훈련과정 및 지원금

- 일반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
HRD-Net(www.hrd.go.kr)을 통해 훈련기관 및 과정·기간 확인
- 훈련비용은 300~500만원 한도로 지원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자부담 차등 부과)
- 훈련장려금은 월 18~36만원 한도로 지원
(단위기간 소정 출석률이 80% 이상)